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

(행정안전부훈령 제105호, 2019, 9, 9, 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
- 3.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
- 4.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. 다 만,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- 5.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부내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이 중 2 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
- ② 위원장은 행정안정부 차관이 된다
- ③ 정부위원은 정책기획관, 인사기획관, 감사관, 지방행정정책관, 안전관리정책관이 된다
- ④ 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되,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.
-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정부위원이 속한 부서의 과장급 공무 원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.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된다.

-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위원회 안건의 준비, 작성,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
- 2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

제9조(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)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 위 과반수의 창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사전컨설팅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심의 · 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.

제10조(회의의 운영) ①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,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
는 해당 사안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

- 1.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
- 2.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
- 3.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·조사·자료수집·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에 수행한 경우
-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보호)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,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이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